

전주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가합11308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윤희준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9.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35,276,336원 및 그중 1,331,379,985원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2023. 7. 10.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2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2. 11. 24. 접수 제169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2 청구원인 중 제1항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및 대지급금 합계 1,335,276,336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1,331,379,98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의 다음날인 2022. 12. 30.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23. 7. 1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중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1)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영, 판사 박세황, 판사 이동진

별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참조). 피고 B는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A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한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